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운영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2월 1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 사항(시행 2022. 6. 8. / 개정 2021. 12. 7.)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나) 근거 상위법을 목적에 반영함(안 제1조).
- 다)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 라)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에서 제4조).
- 마) 경력단절 예방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에서 제6조).
- 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2) 주요내용

(1) 안 제명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 개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시행2022. 6. 8. / 개정 2021. 12. 7.)으로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함.

(2) 안 제3조~제6조(구청장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

-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사항 변경과, 경력단절 예방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안 제7조(지원사업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함.

다. 검토의견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이미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됨.
- 따라서, 종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반영하여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